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50호로 2020년 8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재)영등포문화재단의 사업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항을 명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 예술진흥에 앞장서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법률 위임 근거 없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조항 삭제

(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0. 7. 23. ~ 8. 12.)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증가하는 지역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항제6호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함.

이는 2020년 9월 문래종합예술센터(도림로 133길 15, 문래동2가)가 준공 예정이고, 2021년 3월에 창의예술교육센터(양평동4가 172-1, 舊양평2동주민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시설’을 상위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화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 출 안	수 정 안	비 고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 안 제16조제2항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함.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재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내용으로 위임범위 이탈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저촉사항이나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

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3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